

2025년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

다문화강사 채용 공고

무안군가족센터는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다문화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년 3월 31일

무안군가족센터장

1. 채용 분야

채용분야	○ 다문화강사 1명
활동	○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○ 시간강사 : 1회당 20~25분 실시
수당	○ 활동비(회당) 30,000원
응시자격	▶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○ 결혼이민자 ○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
제출서류	① 강사지원서(별지1) ② 자기소개서(별지2)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(별지3) ④ 자격증 사본(다문화이해강사 수료증 등) ⑤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외국인등록증 등) ⑥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⑦ 경력증명서(경력자에 한함)

2 . 전형 방법

전형구분	전형 방법
1차	서류전형(자격 및 경력에 대한 요건 심사)
2차	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만 면접 심사)
합격자 결정	2차 면접전형 최고 득점자

3 . 일 정

- 가) 접수기간: 2025. 3. 31.(월) ~ 2025. 4. 14.(월)18:00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
- 나) 면 접 일: 2025년 4월 중(서류합격자 추후 공지)
- 다)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, 이메일 접수
- 라) 접 수 처: 무안군가족센터
 - 주소: 58528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130 /무안군복합문화센터 2층
 - E-mail: muan2009@hanmail.net

4 . 기 타

- 가) 강사지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.
- 나)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단, 미 채용자는 본인의 반환 요구서 제출 시 반환 가능(서식별첨)
※ 「채용절차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의하여 최종 합격 공고 30일 후 파기
- 다) 합격자가 합격 포기 및 결격사유,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 합격자(본인 희망시)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.
- 라) 적임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마) 합격자 발표 및 통지: 1차, 2차 합격자 발표는 가족센터 홈페이지 (familynet.or.kr 무안군가족센터) 채용공고란 게시 및 개별 통지합니다.
- 바) 문의: 061-452-1813(채용 담당자)

(별지1)

강사 지원서

접수번호:

분 야				
성 명	한글)	영문)		
생년월일				
주 소	(현거주지)			
연 락 처		전자우편		
직무관련 학교교육	년 월 (과 년) 졸업			
직무관련 경력	기 간	직 장 명	직 위	담당업무
지무관련 자격증	자 격 증 명	취 득 일	발급기관	
본인은 무안군가족센터 강사채용에 지원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				
2025년 월 일				
성명 (서명)				

(별지2)

자 기 소 개 서

※ 특별한 양식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(1~2매 이내)

- 자기소개, 지원사유, 경력 등을 작성

작성자 :

(별지3)

〈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〉

무안군가족센터는 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목적

-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

2. 개인정보 수집항목

- 수집항목: 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학력·경력·자격사항, 출신국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채용심사 기간에만 보유, 이용, 보관됩니다.

4.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

-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.
-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(), 동의하지 않음()

2025년 월 일

성명 : (서명)

무안군가족센터 귀하

※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

<별첨>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무안군수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